2020년 제4회 건축위원회(구조전문위원회) 심의 결과

[1호 안건: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(구조심의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					(.1-1.1.1)			
운영기관 	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			심의일자	2020. 4.14.(서면심의)			
건축종별	[○]신축,	[] 증축	,	[] 대수선,	[]기타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조합	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							
	지번 344번지 일원		관련지번					
	대지면적 35,564.00 m²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	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5,835.43 m²		건폐율 16.41%		층수 지하 : 3층/ 지상 : 29층	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	건축물 동수 10동			
	최고높이 82.3m		용적률	물 298.91%	연면적 합계 166,089.51㎡			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			
	(구조안전)분야	 ○ (사전검토의견 13)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는 현재 구조도면 구조일 반사항에 작성한 대로 특별지진하중 적용하는 골조의 내진상세 적용하면 적정함. ○ 그러나 전이보는 현재 구조일반사항과 조치계획에 작성한 중간모 멘트골조의 내진상세가 아니라 보의 전구간에 소성힌지구간의 내 진상세를 적용해야 함. ○ 중간모멘트골조의 내진상세는 전이보를 제외한 지상층 거더에 적용하면 됨.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기 바람. ○ 전이보 상부 벽체의 편심에 의한 비틀림 검토 시 해당 부재에 작용하는 전단력이 함께 고려 되었는지 확인하기 바람. 						
	(행정)사항	O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할 것			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

2020년 제4회 건축위원회(구조전문위원회)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루원시티 주상3블록 신축사업(구조심의)]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		심의일지	ŀ	2020. 4.14.(서면심의)					
건축종별	[○]신축, []증축, []대수선, []기타				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㈜신영루원시티개발			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주상복합3블록									
	지번 필지	관련지번								
	대지면적 23,045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				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13,359	건폐율	건폐율 57.97%		층수 지하 : 3층 지상 : 49층			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, 판매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	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, 라멘조		구조,	건축물 동수 5 동				
	최고높이 151.6m		용적률	적률 439.89%		연면적 합계 149,911.4915㎡				
심의내용	구 분			심의결과						
	(구조안전)분야	 ○ (조치계획-7) 다음 사항을 설계도서에 보완하여야 함. 1) 감리자는 기초 지반상태를 확인하여 풍화암층 구간의 지지력 확보를 위한 적정 보강 방안을 결정하여야 함. 2) 감리자는 각 동별로 불리한 조건의 지반을 대상으로 지지력 확인시험을 시행하여 결정하여야 함. 3) 감리자는 기초지반이 매우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 보강 방안보다 불리한 조건의 지반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별도의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지지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. 								
	(공통)사항	O 사전검토 의견 반영할 것								
심의결과	*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		